

대리점 거래 가이드 북

2018



목 차

I. 대리점법의 개요 - 5

II. 계약서 작성 의무 - 7

III. 금지사항 - 8

IV. 실무상 주의사항 - 26

Appendix - 27

I. 대리점법의 개요

1. 제정 목적

-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2015.12.22 제정, 2016.12.23. 시행)의 목적은 대리점거래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공급업자와 대리점이 대등한 지위에서 상호보완적으로 균형 있게 발전하도록 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 대리점 거래의 정의

- 공급업자(본사)와 대리점간 상품 또는 용역의 재판매 또는 위탁판매를 위해 행해지는 거래로서 일정기간 지속되는 계약을 체결하여 반복적으로 행해지는 거래.
- * “공급업자”란 생산 또는 구매한 상품 또는 용역을 대리점에게 공급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 * “대리점”이란 공급업자로부터 상품 또는 용역을 공급받아 불특정다수의 소매업자 또는 소비자에게 재판매 또는 위탁판매 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3. 법 적용 제외 사유

- 공급업자를 기준으로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은 제외된다.
- 대리점 기준으로는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에 제외된다.
- 거래상 지위 기준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외된다. 판단 요소는 아래와 같다.
 - 상품시장 및 유통시장의 구조
 - 공급업자와 대리점간의 사업능력 격차
 - 대리점의 공급업자에 대한 거래 의존도
 - 거래의 대상이 되는 상품 또는 용역의 특성

4. 징벌적 손해배상

- 대리점본사가 대리점법 제6조(구입강제), 대리점제7조(이익제공 강요)의 위반행위를 하여 대리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대리점은 손해의 3배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손해배상 책임을 법원에 청구가능하다.

II. 계약서 작성 의무

○ 공급업자는 대리점과 계약을 체결한 즉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명시된 계약서(이하 “대리점거래 계약서”라 한다)를 대리점에게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1. 거래형태, 거래품목 및 기간에 관한 사항
2. 납품방법, 납품장소 및 일시에 관한 사항
3. 상품대금의 지급수단 및 지급시기에 관한 사항
4. 상품의 반품조건에 관한 사항
5. 영업의 양도에 관한 사항
6. 계약해지의 사유 및 계약해지 절차에 관한 사항
7. 판매장려금 지급에 관한 사항
8. 대리점거래계약 당사자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
 - 위탁판매
 - 공급업자가 대리점에 위탁하는 업무의 범위 및 수행방법에 관한 사항
 - 수수료 등 그 명칭에 관계없이 공급업자가 대리점에 지급하는 대가에 관한 사항

○ 대리점거래 계약서에는 공급업자와 대리점이 각각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을 포함) 또는 기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 공급업자는 대리점거래 계약서를 대리점과의 대리점거래가 종료된 날부터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Ⅲ. 대리점법상 금지행위

1 구입강제(밀어내기) 금지

(1) 주요내용

- 자기의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대리점이 구입할 의사가 없는 상품 또는 용역을 구입하도록 강제하는 행위를 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는 행위를 말한다.

(2) 규제의 이유

- 거래과정에서 거래상지위를 이용하여 거래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제품을 구입하게 한다거나, 일방적으로 거래상대방에게만 불이익이 되는 거래조건을 설정 또는 변경하거나, 임직원의 임면에 간섭하는 등 거래상대방의 자유의사를 구속하여 불이익을 제공한다면 결과적으로 거래상대방은 그 경쟁자와의 관계에서 경쟁조건이 불리하게 되며, 반대로 행위자가 이익을 받게 된다면 경쟁여건면에서 그의 경쟁자보다 유리한 위치에 서게 되어 결국 자유경쟁의 기반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3) 범위반 유형

- 주문 자체를 강요하거나, 주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조성하는 행위
- 주문내용을 일방적으로 수정하여 구입할 의사가 없는 상품·용역을 공급하는 행위
- 대리점이 주문하지 않은 상품·용역을 일방적으로 공급하는 행위
 - * 적용례) 대리점에 과다한 물량을 할당한 후 물품대금을 대리점의 금융계좌에서 일방적으로 인출하는 방법으로 구입하게 하는 행위 ('13년 남양유업 사건)

- 별개 상품·용역을 묶음으로만 구입하도록 하는 행위

* 적용례)

- ① 인기제품과 비인기제품을 함께 주문하도록 하여 대리점이 원하지 않는 비인기제품을 구매하도록 강제하는 행위
- ② 상품의 보관·주문을 위한 시스템, 장비 등을 묶어서 판매하여 원하지 않는 장비 등의 구입도 강제하는 행위

(4) 실무상 발생가능 예시

- 남아있는 재고 정리를 위해 주문이 없는데도 대리점에게 밀어내기 하는 행위
- 거래처에 대하여 구입하지 않으면 향후 지속적인 거래에 영향을 받을 것임을 직·간접적으로 알려 구입하도록 하는 경우
- 계속적 거래관계에 있는 대리점에게 주문하지도 않은 상품을 임의로 공급하고 반품을 허용하지 않는 행위
- 대리점에게 과대한 물량을 할당하고 이를 거부하거나 소화하지 못하는 경우 상대방이 그 할당량을 구입하는 것으로 회계 처리 하는 행위
- 대리점업자가 청약 또는 주문하지 않은 상품을 정당한 이유 없이 일방적으로 공급하고 이를 구입한 것으로 정산하거나 이에 준하여 회계처리하는 행위
- 대리점업자의 동의 없이 유통기간이 임박한 상품, 신제품, 판매가 부진한 비인기 제품 등을 일정 수량 이상 반드시 구입 또는 인수하도록 하는 행위
- 대리점업자가 판매하는 상품과 무관한 비품 등 구입할 의사가 없는 상품 또는 용역을 구입하도록 강제하는 행위

(5) 관련 사례

〈대리점의 의사에 반하여 제품에 대한 강제할당등으로 불이익을 준 사례 (2013서경1385, 공정위 의결 2013-165호)〉

[사실관계]

남양유업은 제품회전율이 낮아 유통이 부진한 제품 등의 재고를 강제로 소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대리점에게 유통기한 임박제품, 대리점이 주문하지 않거나 취급하지 않는 제품 등을 강제할당·임의공급 방식으로 구입을 강요하였다. 2010년 9월부터는 대리점이 접속하는 주문 시스템(PAMS21)을 변경하여 대리점의 최초 주문량 등을 검색할 수 없도록 하여, 회사 주문 담당자의 최종 주문량 임의수정이 용이해지도록 하였다.

[공정위 판단]

자기의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자기와 거래하는 대리점에게 유통기한이 임박한 제품 또는 주문하지 않은 제품 등을 구입하도록 강제함으로써 거래상대방에게 구입할 의사가 없는 제품을 구입하도록 강제하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시정명령을 하면서, 밀어내기 및 진열판촉사원 임금 전가 행위 금지, 주문시스템을 대리점 최초 주문기록, 변경 주문기록 및 사유, 최종주문량 등이 나타나도록 변경하고 주문기록 등은 5년간 보존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대리점에 공급한 물품 대금 결제시 제품 주문량·공급량 및 대금 산정 근거 등을 대리점이 확인·승인한 후 대금 지급이 이루어지도록 결제방식을 변경하였다. 또한, 진열 판촉사원 임금 분담 시 분담비율 등을 대리점과 사전 협의 후 계약서에 명기하도록 하였다. 공정위는 위의 시정 명령 및 과징금(125억원) 및 주요 임직원 형사고발이 이루어졌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구입강제가 이루어진 4년여 기간동안 26개 품목전체 물량을 기준으로 관련매출액을 산정한 것은 위법하다고 보았고, 이에 공정위는 대리점이 자발적으로 주문한 물량과 피심인이 대리점의 의사에 반하여 출고한 물량을 구분하는 것이 어려워 정액과징금 5억원을 부과하였다.

〈상시적 밀어내기 행위로 불이익을 준 사례(2013전사1457, 공정위 의결 2015-001호)〉

[사실관계]

정식품 부산영업소는 2011년부터 2013년 6월까지 매월 집중관리 품목을 선정(통상 10~14개 제품)하고 각 제품별로 할당량을 정한 후 관할 35개 전 대리점에 할당량이상 구입하도록 강요하였다. 밀어내기 품목은 신제품 및 매출부진제품, 검은콩깨두유·검은참깨두유 등 타사와 경쟁이 치열한 제품 등에 밀어내기가 주로 발생하였고, 밀어내기 방식은 매월 말 집중관리 품목별 할당량을 정한 후 이를 팩스·이메일·구두로 각 대리점에 전달하고, 대리점이 할당량 미만으로 주문하는 경우 대리점의 주문내역을 영업사원이 임의로 변경하거나, 주문여부와 관계없이 할당량만큼 강제 출고하였다.

[공정위 판단]

공정위는 자기의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자기와 거래하는 대리점에게 제품 구입 할당량을 정하여 할당량만큼 주문하도록 강제하고, 대리점의 주문량이 할당량에 미달하는 경우 대리점이 주문하지 않은 제품을 임의로 공급하는 것과 같이 거래상대방에게 구입할 의사가 없는 제품을 구입하도록 강제하는 행위에 대하여 정식품에게 시정 명령 및 과징금(2억 3,500만원)을 부과하였다.

2 경제상 이익제공강요 금지

(1) 주요내용

공급업자는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대리점에게 자기를 위하여 금전·물품·용역, 그 밖의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도록 강요하는 행위를 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 대리점에게 자신의 거래상 지위를 이용하여 경제상의 이익을 제공하도록 강요하는 행위로서 경제상의 이익에는 금전, 유가증권을 비롯해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것이 포함되고 적극적으로 요구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자신이 부담해야 할 비용을 상대방에게 전가하여 소극적으로 경제적 이익을 누리는 행위도 포함한다. 또한 사업자가 실제 이익을 입었을 것을 요하지도 않는다. 이러한 행위들로는 대량구매자가 구입물량의 일정 비율만큼 무상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사업자가 거래와 무관한 기부금이나 협찬금을 요구하는 행위를 말한다.

(2) 범위반 유형

- 공급업자 필요에 의해 판매촉진행사를 실시하면서 그 비용·인력 등을 대리점이 부담하도록 하는 행위
 - 공급업자 소속 임직원 인건비를 대리점이 부담하도록 하는 행위
 - 대리점 소속 임직원을 공급업자 사업장 등에서 근무하도록 하는 행위
 - 대리점거래와 무관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도록 하는 행위 (예 : 기부금, 협찬금 등)
 - 판매촉진행사를 실시하면서 대리점에 예상되는 경제적 이익에 비하여 과도하게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행위
- * 적용례) 대리점이 자발적으로 참여한 판매촉진행사라도 관련 비용을 전액 부담하게하는 등 비용부담을 과도하게 전가하는 행위

- 대리점 거래에 수반되는 비용을 합리적 이유 없이 대리점이 부담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3) 실무상 발생가능 예시

- 대리점업자에게 거래와 무관한 기부금, 협찬금 등 경제상 이익을 공급업자를 위하여 제공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 자신이 구입하는 물량의 일정 비율만큼을 무상으로 제공하도록 요구하는 행위
- 대리점에 대하여 산출근거나 사용처가 명확하지 않은 협찬금이나 기타 금품 또는 향응을 요구하는 행위
- 자기의 필요에 의해 판촉행사를 실시하면서 거래처로 하여금 판촉행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과도하게 부담시키는 경우
- 자기의 연구비용, 직원 야유회 비용 등을 강제적으로 부담시키는 경우

(4) 관련사례

〈대리점의 의사에 반하여 제품에 대한 강제할당등으로 불이익을 준 사례 (2013서경1385, 공정위 의결 2013-165호)〉

[사실관계]

남양유업은 대리점과의 사전합의 없이 대형 유통업체에 파견된 진열 판촉사원의 임금을 50% 이상 전가하고, 진열 판촉사원 파견 시 제품진열 상태 개선, 재고물량 효율적 관리, 소비자 호감도 증진 등 추가매출 창출 효과가 남양유업에 직접으로 귀속됨에도 불구하고, 관련 비용을 대리점에 일방적으로 전가시켰다.

[공정위 판단]

자기의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자기와 거래하는 대리점에게 진열판촉사원 임금 전가 행위 금지, 주문시스템을 대리점 최초 주문기록, 변경 주문 기록 및 사유, 최종주문량 등이 나타나도록 변경하고 주문기록 등은 5년간 보존하도록 하였다.

3. 판매목표강제행위

(1) 주요내용

- 공급업자는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자기가 공급하는 상품 또는 용역과 관련하여 대리점에게 거래에 관한 목표를 제시하고 이를 달성하도록 강제하는 행위를 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에게 판매목표를 정해 주고 이를 달성하도록 강제하는 행위를 말하며, 대체로 상품의 경우는 판매량 할당 확보가 문제된다. 예를 들어 사업자가 대리점업자에게 판매목표를 정해 놓고 미달성시 거래를 중단하거나 대리점이 인수한 것으로 회계처리 하는 등 제재를 가하는 행위 등을 말한다.

(2) 범위반 유형

- 대리점 계약을 중도 해지하는 행위
- 상품 또는 용역의 공급을 중단하는 행위
- 대리점에 지급할 금액을 미지급하는 행위
- 상품/ 용역의 공급을 축소하거나 지연하는 행위
- 외상매출기간 조정 등 결제조건을 종전보다 불리하게 하는 행위

(3) 실무상 발생 가능 예시

- 공급업자는 자기가 공급하는 상품과 관련하여 대리점에게 거래에 관한 목표를 제시하고 이를 달성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대리점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이익을 주거나 줄 것을 나타내는 것을 말한다.
 - 정당한 이유 없이 판매업자와의 계약을 중도에 해지하는 행위
 - 정당한 이유 없이 제품의 공급을 중단하는 행위
 - 정당한 이유 없이 판매업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

- 부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등 불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 대리점에게 매월 일정액 이상의 판매목표를 부여하고 실제 판매액이 목표액에 미달했을 경우 목표액과 실제 판매액과의 차액을 실제 판매한 것처럼 하여 그에 상당하는 판매수수료를 판매점에 지급하게 하는 경우
 - 판촉차원 순수한 유인수단의 범위를 넘어 판매목표와 연계된 장려금을 지급하는 경우
 - 예) 장려금이 포함되어야 정상적인 유통마진율이 확보되고 그 장려금 지급율이 정상적인 유통마진율에 근접할 정도로 높은 경우
 - 독과점적 지위의 강화, 판매지역제한, 밀어내기 등 공정거래법상 위법·부당한 행위를 달성할 목적으로 판매목표를 강제하는 경우
 - 예) 자사 제품의 판매비율을 전년도 시장점유율 이상으로 유지하도록 강제하는 행위 등
 - 판매목표를 달성하지 못했을 경우 신제품의 판매를 중지하는 등 불이익을 제공하는 경우
 - 판매점이 판매목표량을 달성하지 못하였을 경우 반품조건부 거래임에도 불구하고 반품하지 못하게 하고 대리점이 제품을 인수한 것으로 회계처리하여 추후 대금지급시 공제하는 행위
 - 대리점이 판매목표량을 달성하지 못하였을 경우 본사에서 판매점을 대신하여 강제로 미판매 물량을 덤핑 판매한 후 발생손실을 판매점의 부담으로 하는 행위

(4) 관련 사례

〈판매목표를 설정하여 장려금 명목으로 사실상 달성하도록 강제한 사례(2012 서경2437, 공정위의결 2015-123호)〉

[사실관계]

판매 마진이 거의 없거나 마이너스 상황에 처한 특약점에 판매 목표를 설정하고 달성하지 못할 경우 판매 장려금을 지급하지 않았음.

[공정위 판단]

판매목표의 달성의 강제성과 관련하여, 강제의 수단에는 제한이 없고, 목표가 과도한 수준인지 또는 실제 거래상대방이 목표를 달성하였는지 여부는 강제성 인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또한 목표불이행시 실제로 제재수단이 사용되었을 필요는 없다.

아울러,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는 경우 대리점계약의 해지나 판매수수료의 미지급 등 불이익이 부과되는 경우에는 강제성이 인정되고, 거래상대방에게 장려금을 지급하는 등 자발적인 협력을 위한 수단으로 판매목표가 사용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강제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볼 수 있으나, 장려금이 정상적인 유통마진을 대체하는 효과가 있어 사실상 판매목표를 강제하는 효과를 갖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따라서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4호(거래상 지위 남용-판매 목표강제) 위반에 따른 시정명령 및 과징금(5억원)을 부과하였다.

4 불이익제공행위의 금지

(1) 주요내용

-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제6조부터 제8조까지에 해당하는 행위 외의 방법으로 대리점에게 불이익이 되도록 거래조건을 설정 또는 변경하거나 그 이행과정에서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는 경우를 말한다.
- 거래상지위남용의 가장 빈발한 행위유형으로 거래상대방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거래조건을 당초부터 설정하였거나 기존의 거래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
- 거래조건에는 각종 구속사항, 저가 또는 고가매입, 가격조건, 대금지급방법 및 시기, 반품, 제품검사방법 등 모든 조건이 포함된다. 이러한 행위들로는 반품조건부로 공급한 상품의 반품을 받아주지 아니하여 거래상대방으로 하여금 반품을 포기하도록 하는 행위,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발생한 비용 증가분을 인정하지 않는 행위 등을 들 수 있다.

(2) 범위반 유형

- 계약서 내용에 관해 의견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공급업자의 일방적 해석에 따르도록 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 계약기간 중에 일방적으로 거래조건을 추가하는 행위
-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도 대리점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하는 행위
- 합리적 이유없이 상품·용역의 공급 또는 영업지원을 중단하는 행위
- 계약서 상 판매장려금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이를 삭감하거나 중단하는 행위
- 대리점에 임대한 장비·비품이 대리점 귀책사유로 손실·훼손된 경우에 감가상각을 고려하지 않고 변상하도록 하는 행위

- 공급업자 귀책사유로 파손·훼손된 상품의 반품을 거부하는 행위
- 공급업자 귀책사유로 인한 반품임에도 반품에 소요되는 비용을 대리점에 부담시키는 행위
- 대리점과 사전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거나, 계약기간 중에 합리적 이유 없이 거래를 중단하는 행위
 - * 관련판례) 납품물품에 대하여 충분히 수정보완이 가능한 부분은 계약 일반조건에 따라 그 보완요청이 충분히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납품기한이 도과하였다는 이유로 납품물품에 대한 재검사도 하지 아니하고 다음날 계약해제통고를 한 것은 거래상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하게 거래상 상대방에게 이행과정에서 불이익을 주는 행위에 해당 (대법 1997.8.26. 선고 96누20 판결)
- 판매장려금 지급기준, 판매수수료 등 거래조건을 당사자간 합의 없이 대리점에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변경하는 행위
 - * 관련판례) 사전에 약정된 수수료율을 멋대로 조정한 행위는 거래상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에 불이익을 준 행위에 해당 (서울고법 2012.4.25. 선고 2011누26727 판결)
- 판매장려금 지급기준, 판매수수료 등 거래조건을 합리적 이유 없이 반품이 가능한 제품을 한정하거나 공급제품의 일정비율 내에서만 반품을 허용하는 등 반품을 제한하는 행위
 - * 적용례) 공급업자 내부지침으로 반품비율을 일정 수준 이하로 제한하거나 엄격한 반품제한 정책을 실시하여 대리점의 반품을 사실상 어렵게 하는 행위 (‘13년 남양유업 사건)
- 합리적 이유 없이 공급업자의 귀책사유로 정상적인 재판매가 불가능한 상품의 반품을 거부하는 행위
 - * 적용례) 잔여유통기한이 3~6일인 소위 ‘유통기한 임박 제품’을 일방적으로 대리점에 공급하여 불이익을 제공한 행위 (‘13년 남양유업 사건)

(3) 실무상 발생 가능 예시

- 계약 유효기간 중에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부당한 거래조건을 추가한 새로운 계약을 일방적으로 체결하는 경우
- 계약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하더라도 무조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하는 경우
- 판매업자에 임대한 장비, 비품이 판매업자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손실, 훼손된 경우 감가상각을 고려하지 않은 당초 구입가격에 근거하여 변상하도록 하는 등 부당한 변상기준을 일방적으로 설정하는 경우
- 계약서에 관한 해석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당사의 일방적인 해석에 따라야 한다는 조건을 설정하는 경우
- 대리점과 제품 판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대리점에 일방적으로 불리한 조항을 설정하는 경우
- 거래상대방과의 협의없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조항을 설정하는 경우
- 계약내용을 일방적으로 변경, 추가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을 설정하는 경우
- 재판관할법원을 일률적으로 자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규정한 조항을 설정하는 경우
- 물품에 대한 대금결제 시점에 소유권 판매인에게로 이전되는 것이 아니라 지급기일에 정상결제될 때까지 소유권을 유보하는 조항을 설정하는 경우
- 계약서상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자기의 내규를 따르도록 한 조항을 설정하는 경우
- 공급업자의 귀책사유로 상품이 파손 또는 훼손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반품을 거부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 공급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반품이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운송비 등 반품에 소요되는 비용을 판매업자에게 전가시키는 행위를 하는 경우

- 불량 제품이 발생한 경우 교환비용의 일부를 판매점이 부담하도록 규정하거나 반품에 대해 공동으로 책임지도록 하는 경우
- 상품 공급 또는 영업 지원 등을 부당하게 중단 또는 거절하거나 현저히 제한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 판매장려금 지급 제한 사유와 무관하게 판매장려금을 부당하게 삭감하거나 지급하지 않는 행위를 하게 되는 경우
- 판매물량에 상응하는 부동산 등 담보를 제공받으면서 대금결제의 이행을 보충하기 위해 추가적으로 당좌수표 또는 백지어음을 예치토록 하거나 연대보증인의 입보를 요구하는 등 이중담보제공을 요구하는 경우
- 납품 지체에 대한 지체상금은 규정하면서 대금 지급 지연에 대한 이자지급은 면제하도록 한 조항을 설정하는 경우
- 대리점에 일방적으로 불리한 대금지급조건 등의 거래조건을 설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 대금을 지연지급하면서 지연이자나 어음할인료를 미지급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 계약서상 하자보증기간이 종료된 후에도 하자보수를 강제하는 행위를 하게 되는 경우
- 발주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검수지연, 해당물품에 대한 검사기간 등을 납품 기간에 포함시켜 거래상대방에게 지체상금을 부과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 납품지시후 생산이 완료된 물량을 아무런 하자가 없음에도 이를 취소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4) 관련사례

〈제품의 공급을 현저히 축소 중단하거나 일방적으로 거래를 종료하는 것으로 불이익을 준 사례(2010서경2754, 의결 2013-098호)〉

[사실관계]

국순당은 일방적인 도매점 정리계획에 따라 물량공급을 축소하고계약해지, 판매목표 강제 및 판매지역제한 행위를 하였다.

[공정위 판단]

공정위는 거래상 지위남용(불이익제공)위반에 따른 시정 명령 및 과징금(1 억원)을 부과하였다.

5 경영활동 간섭금지

(1) 주요내용

- 공급업자는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대리점의 경영활동을 간섭하는 행위를 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 거래처의 경영에 대한 관여는 제조업자의 판매정책을 침투시키기 위함 이외에 경영지도, 채권보전, 마케팅 정보의 수집 등 여러 가지의 이유에 의하여 행하여지며, 그 행위 자체가 곧바로 공정거래법상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나, 그 결과 거래처의 사업내용 등에 대하여 정상적인 상관습에 비추어 지나친 제한이나 의무를 과하는 것으로 될 경우는 위반이 된다.

(2) 범위반 유형

- 대리점 임직원의 선임·해임 또는 근무지역 등 결정에 간섭하는 행위
- 대리점의 거래처 현황 등 영업상 비밀을 요구하는 행위
- 대리점의 거래처, 영업시간, 영업지역 등을 일방적으로 정하여 이행하도록 하는 행위
- 합리적 이유 없이 점포환경 개선을 요구하는 행위

(3) 실무상 발생가능 예시

- 공급업자가 자기의 필요에 의해 실시하는 판매촉진행사에 대리점업자가 참여하도록 강요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 대리점업자에게 소속된 임직원이나 판매원의 선임·해임·계약, 근무·영업지역, 거래조건 등을 일방적으로 정하여 이행을 강요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 대리점의 거래처 현황, 매출 내역, 자금출납 내역 등 판매업자의 사업상 비밀에 해당하는 정보를 제공하도록 강요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 대리점의 거래상대방, 영업시간, 거래지역 등을 공급업자가 일방적으로 정

- 하여 이행을 강요하는 등 부당하게 경영활동을 간섭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 거래처 임직원의 선임·해임, 변경 등에 대하여 자사의 지시 또는 승인을 받게 하고,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거래중단, 계약해지 등의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는 경우
 - 합리적 이유 없이 대리점의 거래처 또는 판매내역 등을 조사하거나 제품 광고시 자기와 사전 합의하도록 요구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4) 관련 사례

〈대리점의 영업직원 채용을 간섭한 사례(2012서총3503, 의결 2015-346 호)〉

[사실관계]

기아자동차는 대리점 영업 직원 총 정원제'를 시행하고, 영업직원 채용에 필요한 판매 코드 발급을 지연, 거부하거나 영업직원의 해고를 강요하여 대리점의 영업직원 채용을 간섭하였다.

[공정위 판단]

공정위는 거래상 지위남용(경영간섭) 위반에 따른 시정 명령 및 과징금(5억원)을 부과하였다.

6 주문내역 확인 요청 거부 또는 회피금지

- 자신의 거래상 지위를 이용하여 대리점이 청약 또는 구입의사를 표시한 제품, 수량 등 주문내역의 정당한 확인요청에 대하여 이를 거부 또는 회피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는 행위를 말한다.

7 보복조치금지

- 공급업자는 제5조부터 제11조까지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대리점에게 그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거래의 정지 또는 물량의 축소, 그 밖에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제19조에 따른 분쟁조정 신청
 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9조제2항에 따른 신고
 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에 대한 협조

Ⅳ . 실무상 유의사항

- 대리점을 대등한 업무상 협력파트너로 인식하여야 한다.
- 계약서는 반드시 문서 또는 서면(필요시 전자문서 포함)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 당사가 대리점에 대하여 적용하는 정책 및 지원(장려금제도 및 각종 프로모션 등), 대리점 영업전략, 예상매출액, 판촉활동 등에 대하여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설명하여야 한다.
- 대리점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가 계약서에 대하여 충분히 검토하고 대리점의 사업성을 판단할 수 있는 시간을 주도록 하여야 한다.
- 대리점에게 불이익이 될 수 있는 거래조건을 설정 또는 변경할 때에는, 반드시 합의를 거쳐서 계약서에 명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 대리점 계약 체결을 조건으로 기부금·협찬금 등 거래와 무관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도록 요구하지 말아야 한다.
- 당사거래조건을 실제보다 우량하거나 경쟁사업자 대비 유리한 것으로 고객을 오인시켜 당사와 대리점 계약을 체결하도록 유인하지 말아야 한다.
- 대리점에 계약체결을 이유로 이종담보 제공을 요구하지 말아야 한다.

Appendix

1. 대리점법에서 금지되는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 지정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조 내지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 내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대리점거래에서 금지되는 불공정거래행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입강제 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

시행령 제3조 제3호에 따라 금지되는 행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한다.

1. 대리점이 주문하지 않은 상품 또는 용역을 일방적으로 공급하여 구입하도록 하는 행위
2. 정상적인 상거래 관행에 반하여 별개의 상품이나 용역을 묶음으로만 구입하도록 하는 행위

제3조(경제상 이익제공 강요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

시행령 제4조 제5호에 따라 금지되는 행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한다.

1. 판매촉진행사를 실시하면서 대리점이 얻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제적 이익에 비하여 과도한 비용을 대리점이 부담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2. 대리점 거래에 수반되는 비용을 합리적 이유 없이 대리점이 부담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제4조(판매목표 강제 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

시행령 제5조 제4호에 따라 금지되는 행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한다.

1. 상품 또는 용역의 공급을 현저히 축소하는 행위
2. 상품 또는 용역의 공급을 현저히 지연하는 행위
3. 외상매출기간 조정 등 결제조건을 종전보다 불리하게 하는 행위

제5조(불이익 제공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

시행령 제6조 제9호에 따라 금지되는 행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한다.

1. 대리점과 사전협의 또는 통보 없이 일방적으로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해지할 수 있다는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2. 계약기간 중에 합리적인 이유 없이 거래를 중단하여 불이익을 주는 행위
3. 판매장려금 지급기준, 판매수수료 등 거래조건을 당사자 간 합의 없이 대리점에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변경하는 행위
4. 합리적 이유 없이 반품이 가능한 대상 상품을 한정하거나 공급한 제품의 일정비율 이내에서만 반품을 허용하는 등 부당하게 반품을 제한하는 행위
5. 합리적 이유 없이 공급업자의 귀책사유로 정상적인 재판매가 불가능한 상품의 반품을 거부하는 행위

제6조(경영활동 간섭의 유형 또는 기준)

시행령 제7조 제4호에 따라 금지되는 행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한다.

1. 합리적 이유 없이 대리점의 점포환경 개선을 요구하는 행위

제7조(재검토기한)

공정거래위원회는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